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5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 송재봉 · 황정아 · 임광현

이재관 · 김동아 · 김우영

임호선 • 복기왕 • 장종태

박범계 • 추미애 • 이광희

황명선 • 이강일 • 이연희

백승아 · 장철민 · 강준혁

이정문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이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 별회계만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 현 가능성이 낮아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 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6조 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6조의2(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06조의2(지역균형발전특별회
	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
	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
	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
	<u>다.</u>